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관광안내소는 9개소로 그간 운영결과에 따르면 타 기관(관광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와 시설위치가 인접하여 안내기능이 중복되거나 관광안내 수요가 줄어들어 안내소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3개소를 폐쇄 및 통합 정비하고
- 서울시 직영 관광안내소 현황

| 안 내 소 |     |     | 운 영 인 력 |     |            |            | 정 비 대 상   |
|-------|-----|-----|---------|-----|------------|------------|---|
| 계     | 종 합 | 간 이 | 계       | 계약직 | 통 역<br>도우미 | 자 원<br>봉사자 | ○ 총 3개소<br>-폐쇄 1(신촌간이)<br>-통합 1(이태원간이)<br>-이관 1(잠실종합) |
| 9     | 5   | 4   | 199     | 8   | 41         | 150        |   |

※ 총 33개소 : 시직영 9, 자치구 6, 관광공사 3, 여행협회 6, 기타 7

- 관광안내소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관광안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임.
- 다만, 운영개선을 지나치게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9개소의 관광안내소를 3개소 줄여 6개소로 통·폐합함으로써 관광안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그동안 근무해온 서울시 계약직원(8명)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실직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위탁기관에서 이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안내소(안내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원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청계천북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544 |
|------|-----|

2004년 9월 7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04년 8월 19일
- 다. 회부일자 : 2004년 8월 23일
- 라. 상정일자 : 2004년 9월 7일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제안설명자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식효)

□ 제안설명 요지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설치목적으로 보아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에 맞추어 그 존속기한을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직제대로 변경하며,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존속기간을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까지로 함 (안 제2조 제2항).
- 나. 각 분과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춰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을 “교통국장”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함 (안 제6조 2항).
- 다.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함(안 제7조의 2항).

3. 검토 의견 (전문위원 안석수)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현직제 대로 변경하며,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 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한 까지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가. 시민위원회 존속기한 및 위원임기 관련 (안 제2조 및 제7조)

현행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8개 위원회 총 1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규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규정 되어 있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설치목적상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당연히 그 임무와 역할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복원공사 준공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도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나.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 변경 관련 (안 제6조)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문화관광국장”에서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실장”에서 “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에서 “교통국장”으로,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른 후속절차로 조례정비 차원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